

보도 일시	2023. 2. 23(목) 11:00 2. 24.(금) 조간	배포 일시	2023. 2. 23.(목) 09:00
담당 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정석 (054-429-7800)
		담당자	사무관 이경연 (054-429-7804)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 '17~'19 농지요건 삭제에 따른 신규 신청 필지 부적합 신청 주의 필요 -
 - 신청 가능 필지라도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야 -

< 주 요 내 용 >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폐경지·농막 등의 농지는 제외
- (신청가능)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 직불의 대상이었던 농지로서,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 쌀직불: 1998~2000년, 밭직불: 2012~2014년, 조건불리직불: 2003~2005년
- (신청제외) 폐경지, 묘지, 농막, 웅덩이, 퇴비장 등 농지라 하더라도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면적은 신청 제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알렸다.

* 비대면신청: 2.1.~2.28.(온라인) / 대면(방문)신청: 3.2.~4.28.(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 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 쌀직불: 1998~2000년, 밭직불: 2012~2014년, 조건불리직불: 2003~2005년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대인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지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이 신청인 즉 농업인에 대한 자격 요건에도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에 대한 주요 요건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신청) 농지 1천㎡ (농업법인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 특히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농업인은 신청 전에 신청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신청 제한 농지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이 누락되었거나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터넷(www.agrix.go.kr), 전화(1644-87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공익직불제 문의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농업경영체등록·공익직불제 문의 전화 상담

☎ 1644-8778 → 내선 1번(농업경영체), 2번(공익직불제)

- 붙임 1.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면적)
2. 공익직불금 관련 부정수급 유형 및 제재
3.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요건



붙임1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면적)

- ☑ 아래와 같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 또는 면적분을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폐경



콘크리트 포장 농로



묘지



농막



농지의 주차장 설치



간이저온저장고



농지의 건축물 설치



퇴비장

1 부정수급이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부정수급 유형

- (위조)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 (거짓신청) 양도세 감면, 농업인 지위 유지 등을 목적으로 농지 소유자가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신청, 수령하는 경우
- (농지분할) 보다 많은 직불금 수령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분할하여 전년도 직불금 신청 면적보다 당해 연도 신청면적이 줄어든 경우
- (무단점유)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 국공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경작 하면서 직불금을 부당 신청·수령하는 경우

3 부정수급자 제재

- 부정수급자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부당이득금액에 추가하여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최대 8년 동안 직불금 등록(신청)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한 경우

구분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소농직불	면적직불
등록(신청)	-	-	5년	3년
수령	전액환수	5배	8년	5년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여 등록·수령한 경우

구분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소농직불·면적직불
등록(신청)	-	-	3년
수령	전액환수	3배	5년

구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요건	
	농지	농업인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쌀직불('98~'00), 밭직불('12~'14), 조건불리직불(2003~2005) 중 어느 하나의 직불 및 기간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지 ※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농지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공유지 무단점유 등) •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법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수령자) '16년 이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또는 공익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자 • (정책 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의 정책 요건 해당자 • (신규 신청자)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 4,500만원)이상
소농직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당 신청 가능면적: 0.1ha~0.5ha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지 면적 합이 0.1~0.5ha 이하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 농가 당 120만원 일괄 지급 	
면적직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당 신청 가능면적: 0.5ha~30ha(법인 0.5ha~50ha)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 ▶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6ha 이하, 3구간 6ha 초과로 구분 ▶ 최대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이고,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 	